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



수원시의회
SUWON CITY COUNCIL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

2017. 12.



수원시의회
SUWON CITY COUNCIL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참여 연구진

■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참여 의원

	연구단체 대표
	한원찬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노영관 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민한기 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명규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기정 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양민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정렬 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 연구 용역기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성 명	소 속	직 위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책임연구원
배석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연구원

제 출 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 표 최 인 혜

목 차

I 연구 개요	1p.
II 연구 목적	2p.
III 연구 추진 방향	3p.
IV 인력 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5p.
V 지방자치단체 위탁 제도의 이해	6p.
VI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유형	11p.
VII 수원시 위탁사무 문제점	26p.
VIII 결론 [제도개선 과제]	28p.
☐ 수원시 위탁사무별 검토·의견	28p.
☐ 수원시 위탁조례 및 사무(시설)현황	81p.
☐ 수원시 위탁조례 정비 방향	86p.

I

연구 개요

□ 연 구 명 :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

□ 연구의 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사무 위탁 확대
 - 집행적 성격이 다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대폭 위탁되는 추세임
- 1998년 「지방자치법」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제도화 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사무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 표출
 - 특히 위탁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하는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신뢰 추락은 물론, 행정 불신을 초래
- 행정사무 위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 및 정비 시급

Ⅱ

연구 목적

□ 과 업 명 :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

1. 연구의 목적

-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확보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수원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 조례와 관련하여 개별 법령 상 위탁의 근거가 없는 조례 발굴
- 법령과 상충되는 위탁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 및 합리적 보완 방향 제시
- 입법의회로서의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2.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부패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법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조속히 개정, 보완

- 법령으로 정한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경우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권한 법정주의)

→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은 반드시 법적근거 필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주36)

- 현재 수원시에서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 중인 민간위탁 조례와 더불어, 공공단체(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등에 위탁 중인 관계조례들을 발굴하여 사무 위탁의 법적근거, 수탁기관의 법적지위를 기준으로 해당 사무·시설별 위탁조례를 유형별로 구분함

→ 위탁 조례가 개별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수탁기관의 법적지위(자격 부여), 그 밖에 절차적 사항들이 법령상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 개별 조례의 규정들이 개별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개별 조례가 기본조례와 합치되는지 여부 등 점검

→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간 부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점검하여 정비 방향 제시

III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수행방법

- 현행 조례의 적법성·타당성 여부 전수조사 및 검토
-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조례 비교 검토
-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 후 합리적 방향 제시

2. 연구 수행의 법적논거

- 법령·조례 상 명문의 규정
- 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 정부 소관부처 기관의견(질의·회신)

3. 기타

- 법령상 위탁의 근거가 조례와 합치되는지 여부
- 법령상 조례의 위임범위 설정의 적법성 여부
-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입법 미비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항 점검
- 위탁사무 전체에 대하여 위탁 유형별로 법적근거, 법적지위를 기준으로 정비 방향 제시

IV

인력 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 연구 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대상 조례 발굴 · 검토 및 정보 조사 등]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과업 분담내역

직책	성명	업무 분장 내역
책임연구원	최인혜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문헌 정보 조사 등

V

지방자치단체 위탁 제도의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기능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근거, 입법한계와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헌 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고유사무)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를 수행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고, 자치단체도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원칙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함께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 위임사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로서,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뉘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직영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하에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는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 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서,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I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유형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민간위탁’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이 아닌,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정권한’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으로 정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규 제정권, 조사권, 명령권, 허가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기관에 위임된 권한 유형】

- ☐ **규칙 제정권**: 법령에 규정된 정책의 세부사항을 보충할 목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갖는 일반적 규칙·규정을 발하는 권한
- ☐ **허가권**: 일정한 유형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나 허가를 교부·거부·갱신·취소하는 권한
- ☐ **조사권**: 규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얻을 목적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도서·문서·기록 등을 검증하고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 ☐ **명령권**: 통상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규제 법규에 따라서 사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작위(명령) 또는 부작위(금지)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권한

-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개별)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단체위임) 및 제9조제2항의 자치에 관한 사무(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수탁대상기관을 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단체, 기관, 개인으로 규정하고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위임사무의 경우 위탁 가능한 사무란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로도 이미 확립돼 있다. 자치사무(고유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TIP>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서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 (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1헌라1)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며 (법제처 법령해석)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나. 민간위탁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권익 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 민간위탁은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사무가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 정의】

-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주 위탁 대상이나,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사무, 인허가 및 단속업무 등 권력적 행정이나 규제사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 사무 중 일부를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 및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주차요금 징수, 지방세 징수)

- 따라서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지방 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대상이다.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이란, 수권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공공기관 등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 구체적으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의 범위」

-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의 범위」

- ➔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 ➔ 또한, ‘그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에 있어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대상과 범위가 개별법령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그 해석에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151조에 규정된 사무 위탁의 대상은 공공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상 그 대상과 범위의 실질은 공공기관·공공단체 즉 공공부문인 관계로 민간위탁과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편의상 ‘공공위탁’이라 한다.
- 실제로 정부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출연연구원 등의 각종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15)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04조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다(제151조).
- 공공기관·공공단체의 대상 범위를 세분해 보면, 대법원은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아울러 공공단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한 공법인을 포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재단법인/주식회사),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보조·지원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체육회, 문화원 등)가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책무가 따른다.

□ 공공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 대상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가 된다.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개념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 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로서,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유재산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의거한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 방법, 수입·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비용과 보조내용,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을 적용한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 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 관리위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관리수탁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대상 법정수탁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자격은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입찰 참여가 가능함

공공시설(행정재산)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
[공유재산법-고시]

- 개별법령에서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일반적인 위탁(민간위탁·공공위탁)과 중복되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 환승주차장, 관광지·유적지,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 재활·요양병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VII 수원시 위탁사무 문제점

【 사례 1】

- 수원시민회관 등 일부 공공시설(행정재산)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등 개별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해당 위탁은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중복되는 관계로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함

【 사례 2】

- 수원시 미술전시관 등 일부 공공시설(행정재산)의 경우, 개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관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위탁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함

【 사례 3】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등 일부 공공시설(행정재산)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개별조례에서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구 분	문 제 점	개선 과제
1.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 (공공기관) ·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151조 및 개별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음 □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의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반면, 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면서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 특히, 법령상 근거 없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공공부문을 배제한 채 공공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수탁기관 참여를 제한 □ 공공위탁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등 위탁의 선행절차 누락으로 시의회 고유권한 침해	민간위탁 공공위탁 통합 운용 ↓ 공공위탁 근거 마련
2.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과 혼용	□ 현재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의 절차와 방법으로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준용함 □ 공공시설로서 행정재산인 경우, 법령상 위탁의 근거가 없거나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가 관리위탁과 중복된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이는 주된 사무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므로, 실무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사무이면 적용 불가	관리위탁 대상사무의 기본 조례 제정

□ 수원시 위탁사무별 검토·의견

1. 수원청년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청년고용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2. 시청 직장어린이집(2개소)

가. 근거 법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인·단체 개인	민간위탁

3. 자유회관 관리

가. 근거 법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총연맹법)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자유총연맹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 휴먼콜센터 운영

가.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방자치법 제104조	자치 사무	○	수원시 민원처리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공공

5. 가사홈서비스 운영

가.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방자치법 제104조	자치 사무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공공

6. 수원시 일자리센터

가. 근거 법규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단체	민간·공공

7. 근로자종합복지관

가. 근거 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위임 사무	○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근로복지공단·비영리단체	관리위탁

8. 비정규직 노동자복지회관

가. 근거 법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종 시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비정규직법 파견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9. 유기동물 보호 · 관리

가. 근거 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동물보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10. 보훈회관

가. 근거 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11. 현충탑 및 주차장

가. 근거 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12. 사회복지관(5개소 - 연무/우만/영통/광교/능실)

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13.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 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 공공

14. 다시 쓰기 노숙인 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노숙인 복지법 제15조제1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15. 가족여성회관

가. 근거 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 ①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저출산·고령사회법 제9조 / 제29조	위임 사무	○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연구소·대학 관련기관	민간·공공

16.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가. 근거 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	관리위탁

17. 여성문화공간 - 休

가. 근거 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여성문화 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성인지 교육 외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18.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위탁

19. 여성의 쉼터

가. 근거 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호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 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12조제4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 공공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대학·공익법인	민간·공공

21. 외국인복지센터

가. 근거 법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을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 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재한외국인처우법 제21조	위임 사무	○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민간 · 공공

22. 여성안심 귀가 로드 매니저

가. 근거 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여성 안심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기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성인지 교육 외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23.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 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운영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 공공

24. 각종 복지관 등(22개소)

SK청솔노인복지관 / 서호 노인복지관 / 버드내 노인복지관 /광교 노인복지관/밤밭노인복지관
수원시노인회관 / 서호노인복지관 별관 /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 수원시니어클럽 / 굿드림
장애인작업장 / 행복을 만드는 집 / Happy 해누리작업장 /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 /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 오목천동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호매실 장애인종합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인복지센터

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25.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가. 근거 법규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26. 수원시립어린이집(39개소)

가. 근거 법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 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법인·단체 개인	민간위탁

27.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영유아 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제1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민간·공공

28. 수원미술전시관 / 영통 어린이미술체험관 /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가. 근거 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위임 사무	○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 단체·개인	관리위탁

29. 수원시민회관

가. 근거 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0. 고색향토문화전시관

가.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	.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관리위탁

31. 수원시티투어 운영 / 공정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

가. 근거 법규

관광진흥법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5. 지역특산물 개발 및 홍보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7.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					
8. 관광통계					
9. 관광자원 개발					
10.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1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12.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13.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관광해설사 외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2. 의료관광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의료관광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3. 수원시평생학습관

가. 근거 법규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평생교육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4. 수원외국어마을

가. 근거 법규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전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평생교육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5. 청소년쉼터

가. 근거 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제3항	위임 사무	○	.	청소년단체	민간위탁

36. 청소년 성문화센터

가. 근거 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청소년 성보호법 제47조제1항	위임 사무	○	.	청소년 전문단체	민간위탁

37. 현수막 게시대

가. 근거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 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옥외광고물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38. 광고물 안전점검 / 교육

가. 근거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 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옥외광고물법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사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등	민간·공공

39. 택시 쉼터 (4개소)

가.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0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0.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가. 근거 법규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환경보건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1. 생태환경체험관

가. 근거 법규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생태환경 체험 교육관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2. 기후변화체험관

가. 근거 법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녹색성장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 장려를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저탄소 녹색성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설치·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3. 생태환경 체험교육

가. 근거 법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환경교육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4.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가.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	수원시 화장실 문화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5. 자원회수시설 / 수원시 체육문화센터 /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 음식물자원화시설

가. 근거 법규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수탁기관의 자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시시설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 별표 4과 같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편익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	--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	위임 사무	○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4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위임 사무	○	·	공공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47. 행복정신건강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지역사회건강조사 / 성인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가. 근거 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추진 등)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시·군·구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 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치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정신보건법 제15조제6항	위임 사무	○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정신건강 증진시설 대학교 기관·단체	민간·공공

48. 자살예방사업

가. 근거 법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시설 대학교 비영리법인	민간·공공

49. 지역사회건강조사(3개소)

가. 근거 법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위임 사무	○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공공

50. 근골격건강센터

가. 근거 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척추건강을 위한 검진 및 추구관리 2. 낙상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동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의 근골격 건강증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51. 도시농업아카데미 / 맞춤형텃밭 / 힐링텃밭 정원 / 아파트 생활원에 및 치유태밭 교육

가. 근거 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도시농업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제16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민간위탁·공공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위임 사무	○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도시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공공

52.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 행궁동 시민자전거대여소

가. 근거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2.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3.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
4. 자전거 안전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X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용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53. 광교호수공원프로그램 / 제22호 소공원 등 / 정자 / 기차놀이 / 별빛 / 선재미
동말 / 교동 / 매여울 어린이공원관리 등

가. 근거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원녹지법)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 공원 관리 2.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관리 3. 공원 내의 북카페 및 야영장 등 시민커뮤니티 공간 4. 제6조에 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					
--	--	--	--	--	--

나. 검토 의견 :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음

다. 위탁 유형 : 관리위탁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위임 사무	0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위탁

□ 수원시 위탁조례 및 사무(시설)현황

총 29개 부서	위탁 기본조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1개
	위탁 개별조례	44개
	위탁 사무(개별법+지방자치법 포함)	147개

(2017년 6월 현재)

연번	위탁사무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1	수원청년지원센터	청년고용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2	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인·단체 개인	민간 위탁
3	자유회관 관리	자유총연맹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	휴먼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자치 사무	O	수원시 민원처리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공공
5	가사홈서비스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자치 사무	O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공공
6	수원시 일자리센터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단체	민간·공공
7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근로복지공단·비영리 단체	관리 위탁
8	비정규직 노동자복지회관	비정규직법 파견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9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10	보훈회관	국가보훈기본법	위임 사무	O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11	현충탑 및 주차장관리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연 번	위탁사무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12	사회복지관 (연무/우만/영통/ 광고/능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13	수원 휴먼서비스 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14	다시 서기 노숙인 지원센터	노숙인 복지법 제15조제1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15	가족여성회관	저출산·고령사회법 제9조 / 제29조	위임 사무	O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연구소·대학 관련기관	민간· 공공
16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	관리 위탁
17	여성문화공간 - 休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18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건강가정지원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 위탁
19	여성의 쉼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12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대학·공익 법인	민간· 공공
21	외국인복지센터	재한외국인처우법 제21조	위임 사무	O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민간· 공공
22	여성안심 귀가 로드 매니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23	글로벌청소년드림 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24	각종 복지관 등 (22개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연 번	위탁사무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25	수원아동보호 전문 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26	수원시립어린이집 (39개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법인·단체 개인	민간 위탁
27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제1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민간· 공공
28	수원미술전시관 / 영통어린이미술체 험관 /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위임 사무	O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비영리법인 단체·개인	관리 위탁
29	수원시민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0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O	.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개인	민간· 공공
31	수원시티투어운영/ 공정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2	의료관광지원센터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3	수원시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4	수원외국어마을	평생교육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5	청소년 컴퓨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제3항	위임 사무	O	.	청소년단체	민간 위탁
36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보호법 제47조제1항	위임 사무	O	.	청소년 전문단체	민간 위탁
37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38	광고물 안전점검 / 교육	옥외광고물법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사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등	민간· 공공

연 번	위탁사무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39	택시 쉼터 (4개소)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O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0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환경보건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1	생태환경체험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생태환경 체험 교육관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2	기후변화체험관	녹색성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설치·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3	생태환경 체험교육	환경교육진흥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4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자치 사무	O	수원시 화장실 문화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5	자원회수시설 / 수원시 체육문화 센터 /서수원 주민 편익시설 / 음식물 자원화시설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0조제2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축진 및 주변지역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46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위임 사무	O	.	공공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47	행복정신건강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사업/지역사회 건강조사/성인정신 건강센터 /노인 정 신건강센터 /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법 제15조제6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정신건강 증진시설 대학교 기관·단체	민간· 공공
48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 증진시설 대학교 비영리법인	민간· 공공
49	지역사회건강조사 (3개소)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위임 사무	O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 공공
50	근골격건강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연 번	위탁사무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근거 조례	법정위탁 대상기관	위탁 유형
51	도시농업아카데미/ 맞춤형 텃밭/ 힐링 텃밭 정원/ 아파트 생활원에 및 치유 텃밭 교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도시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 공공
52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 행궁동시민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X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용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53	광고호수공원프로그 램 / 제22호 소공원 등 /정자 /기차놀이 별빛 /선재미 /동말/ 교동 /매여울어린이 공원관리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위임 사무	O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민간·공공	관리 위탁

□ 수원시 위탁조례 정비 방향

- *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 및 관리위탁 기본조례가 미제정 되어 절차적 하자가 발생
- * 법적근거·법적지위를 기준으로 위탁유형별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함

1.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민간 · 공공 통합)

- ◎ 행정권한의 위탁에 있어서 각 수탁기관의 법적지위(민간 / 공공)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재 수원시는 해당사무를 민간의 법인 · 단체 · 기관 · 개인에게만 위탁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및 법령 위반 우려
- ◎ 현행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공공부문(공공기관 · 공공단체)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제정 · 운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 수탁기관의 정의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공공기관 · 공공단체)을 적용하되,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특별히 정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야 함
-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가칭 「수원시 사무 위탁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정의를 함께 규정하도록 함
- ◎ 「수원시 사무 위탁 기본조례」를 통합 제정한 후 관계 개별조례의 일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2. 수원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제정

- ◎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시설)는 법적근거와 제반 절차가 서로 다른 관계로, 각각의 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 우려
- ◎ 개별법령에 행정권한 위탁의 근거가 없는 공공시설물이거나 또는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리위탁이 중복되는 공공시설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 공공시설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리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원시는 현재 법적근거와 절차가 다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 따라서 수원시에서 공공시설(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현행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거나 가칭 「수원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관리위탁 대상사무(시설)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
- ◎ 「수원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제정 후 관계 개별 조례의 일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3. 조례가 없는 위탁사무의 개별 운영조례 제정

-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민간부문(법인·단체·기관, 개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공금 지출을 하려면 법령 및 (개별)조례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수원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함
- ◎ 수원시 위탁사무 중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청소년 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의 사무의 경우, 개별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거나 또는 조례 없이 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법」 및 관계조례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발생
- ◎ 관계 위탁조례 정비 시, 미제정 위탁사무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뒷면 표지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